

실명확인

#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내용(변경·정정)승인신청서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내용(변경·정정)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앞

보 험 계 약 내 용	구 분	당 초 계 약 내 용	변 경 또는 정 정 내 용
	증권 번호 (배서번호)	- -	- -
	보험계약자 (신청인)	(인)	(인)
	피보험자	(사단)금융결제원	(사단)금융결제원
	보험가입 금액	원화 외화	
	보험기간	부터 까지( 일간)	부터 까지( 일간)
	보증내용 (피보증인)	CMS 이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CMS 이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주내 계 약 용	계약기간 <small>(하자담보기간,납기,입찰일)</small>	
	계약금액 <small>(채무액,보증금액,세액)</small>	

계 약 변 경 사 항	내 용	
	사 유	
추가(환급)보험료		
심사구분		1. 스피드 2. 지점 3. 본부 4. 본사 5. 생략 6. 위임이내 7. 위임초과

기 타 사 항	인수유형		인수조건	
	청약담당자		영업대리점	영업부서 강남지점
	출력일자		참고사항	

결 재	담당	차장	부서장



**서울보증보험**  
Seoul Guarantee Insurance  
www.sgic.co.kr



#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내용(변경·정정)승인약정서

보증계약자인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 )보증보험 계약내용(변경·정정)승인 계약(이하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과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보증가입금액) 본인이 회사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보증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보증가입금액	( )	
--------	-----	--

제2조(채무 또는 의무의 성실이행) 본인은 제1조의 보증보험계약 및 그 변경(보증가입금액의 증액·감액, 보증기간의 연장·단축, 기타사항의 변경) 계약에 따라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증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②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해 산정한다.

③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즉시 변상한다.

- 가. 본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보전(해지포함)·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 나.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 다. 소송비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 라.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4조(담보) ①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에 제공된 담보의 가치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의 신용악화 등 변제능력이 변동되어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회사가 담보의 교체,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의 교체, 추가보증을 요청하면 곧 그 요청에 따르기로 한다.

②본인과 보증인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데 동의하며, 그 취득금으로 회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잔존채무도 즉시 변상한다.

제5조(담보물건의 보험가입) ①본인과 보증인은 제4조의 담보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종류·금액·기간 등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담보권이 해지되거나 소멸할 때까지 그 보험에 계속 가입하겠으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②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한다.

③본인과 보증인이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하고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수 또는 질권설정하여도 본인과 보증인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본인과 보증인은 본인의 성명·주소·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본인의 재산·경영·업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 알린다.

②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린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알릴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제7조(사전구상) ①본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이나 통지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 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때

다. 본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라. 본인의 재산 또는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의 명령이 있거나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마. 본인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바. 본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사. 본인이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아.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한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및 보증인은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회사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또한 회사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④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주계약의 목적물이 있으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회사에 인도하고, 회사가 보관·관리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

제8조(변제 등의 총당순서) ①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나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이 제3조에서 약정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회사가 제3조 제3항의 비용, 지급보증금, 지급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총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담보나 보증인의 유무 등 채권보전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총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위험부담·면책조항) ①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이하 "증서등"이라 한다)가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 회사의 장부·전표 또는 전산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②회사가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본인과 보증인이 회사에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며, 증서 등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_\_\_\_\_지점(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다만, 본인과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연대보증) ①본 보증인은 보증계약자가 회사와 약정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채무를 보험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본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제공한 담보 또는 타 보증인을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로 대체하거나,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으로 교체를 요청할 경우, 회사가 동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담보를 대체하거나 보증인을 교체하면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 의한 보증) 보증인이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증인인 경우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50%( )로 한다.

제13조(신용정보의 제공)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본인과 보증인의 보험사고내용을 은행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4조(특약조항) 본인과 보증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

본인과 보증인은 앞면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내용 (변경·정정)승인신청서에 기한 보증보험계약내용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정서 및 이 약정서의 주요내용인 보증보험 계약관련 중요내용설명문을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증 계약 자	주 소		자 택 전 화 번 호	
	영 업 장 주 소		영 업 장 전 화 번 호	
	E-m a i l 주 소		휴 대 폰 번 호	
	상 호 · 직 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인)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연 대 보 증 인	주 소		자 택 전 화 번 호	
	영 업 장 주 소		영 업 장 전 화 번 호	
	E-m a i l 주 소		휴 대 폰 번 호	
	상 호 · 직 업		보 험 계 약 자 와 의 관 계	
	성 명	(인)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 이행(지급)보증보험 특별약정서

증 권 번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보 험 가 입 금 액	₩	보 험 료	₩
보 험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일간)		
보 증 내 용	CMS 이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특 별 약 관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특약조항]			
보증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본 청약건이 갱신 계약인 경우 100 - 000 - 호 증권에 의거 발생된 채무 포함)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			

발급일자    20    년    월

보 험 계 약 자	(인)
-----------	-----

연 대 보 증 인	(인)	(인)	(인)
-----------	-----	-----	-----

(인)	(인)	(인)	(인)
-----	-----	-----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귀중





# 보증보험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

- 아래사항은 우리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와 그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약관 및 약정서 중요 내용

-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의 채무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피보험자(귀하에게 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하는 단체 또는 개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 경우 우리회사는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각종 법적절차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비용을 귀하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우리회사는 귀하께서 보험사고 발생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우리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우리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또는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거나, 귀하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나빠졌을 경우 등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귀하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

-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내에서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429조 ①항)
- 우리회사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조항)
- 연대보증인이 2인이상인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48조 ②항)

## 연대보증인 제도

-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신용·이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 등 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에 비하여 신용·이행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에게 대하여 보증보험 이용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 즉,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자신의 신용·이용능력을 확인 또는 보완시켜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증권을 발급하므로써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    년    월    일

보증계약자	(인)		
연대보증인	(인)	(인)	(인)
	(인)	(인)	(인)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서울보증보험(주) 귀중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및 업무위탁업체\*\*\*\*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직업, 직장 등)
  - 보증(신용)보험 계약체결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체결 건 포함)
  - 채무보증정보(본 보증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 주)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개인신용(주) 등  
 \*\*\*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  
 \*\*\*\* 각종 안내문발송(만기, 보험사고, 보험금지급, 변제 등)을 위한 업무위탁업체에 상기 신용정보 중 성명, 주소, 계약내용 등 안내에 필요한 내용만 제공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 연대보증인 : (인) 연대보증인 : (인)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주) 귀중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되거나 귀사가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정보가 제공되거나 귀사가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직업, 직장 등)
- 보증(신용)보험 계약체결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체결 건 포함)
- 채무보증정보(본 보증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 □ 활용 목적

- 당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사은·판촉 행사 등의 안내
- 당사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 연대보증인 : (인) 연대보증인 : (인)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험계약과 관련한 기타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안내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보증시스템을 이용한 보험증권 교부 확인서

본인은 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경우 실물 보험증권 교부를 생략하고, 귀사의 전자보증시스템을 이용한 보험증권 교부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피보험자가 귀사와 "전자보증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으로 보험증권을 교부 받기로 한 경우
- 본인이 귀사의 "보험증권 인터넷사서함" 이용을 신청한 경우  
(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

☞ "보험증권 인터넷사서함" 이란 보험증권을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사이버지점의 인터넷사서함에 보관시키고, 증권번호와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보험증권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귀중





## 보증보험 발급요령 및 첨부서류 안내

- 본 신청서는 (사단)금융결제원 CMS서비스 이용 중 금액, 기간변경에 사용하는 보증보험 청약서입니다.

###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아래 첨부서류를 Fax 또는 이메일로 접수 후 전화통화 (Tel, Fax 및 담당자 꼭 기재요망)

- 법인(사업자번호), 개인(대표자)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업무처리방법

Fax/E-mail 접수(보증보험에서 선 전산처리) → [www.sgic.co.kr](http://www.sgic.co.kr) 접속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전자서명 메뉴에서 로그인 후 증권번호 클릭하여 서명 → 보험료 입금 → 증권전송

###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

※ 청약서(1~7Page) 작성 후 아래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우편 송부

- 월간 출금한도금액 3천만원 이상 이용 시 개별문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인 필요여부 확인)
- 작성 방법 예시

보증 계약 자	상	호	서울보증보험	→	1~7Page까지 보험계약자 부분만 작성
	성	명	홍 길 동 (인)	→	(인) 부분에 도장날인
	사업자(주민)번호		123-45-67890		

※ 작성하는 보험계약자 및 도장날인 (인) 은 총 7곳 입니다.

청약서는 7장이며 1~7p까지 간인, 청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으로 우편접수

### ● 첨부서류 및 사용도장 안내

구분	준비서류	사용도장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CMS 이용신청서 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CMS 이용신청서 사본	법인인감 또는 비영리단체 직인

### ● 보증보험사 담당자

- 서초지점 : 최동욱

Tel : 02-561-5021 Fax : 02-508-3121 Mail : [sgic.apple@gmail.com](mailto:sgic.apple@gmail.com)

입금계좌 (신한은행 325-81-61837191, 예금주 서울보증보험)

- 강남지점 : 정대진, 이현호

Tel : 02-566-5689 Fax : 02-566-5968

입금계좌 (신한은행 325-81-60532876, 예금주 서울보증보험)

- 우편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11층 서울보증보험 CMS 담당자 (135-934)